감염된 식품취급자에 의한 식품매개성 질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취급자 보고 동의서

본 동의서의 목적은 식품취급자 및 조건부 피고용인들이 아래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식품매개성 질병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인은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데 동의합니다:

증상

설사, 열, 구토, 황달, 열을 동반한 인후통, 손, 손목, 또는 노출된 신체부위의 고름이 포함된 병변 (예: 종기 및 감염된 상처, 크기가 작더라도 보고 대상임)

의학적 진단

노로 바이러스,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 살모넬라 타이피(장티푸스), 쉬겔라균,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A형 간염, 이외 105 CMR 300.000에 따라 식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기타 질병. 추가 정보는 식품 보호 프로그램 전화 617-983-6712로 연락하거나 역학 프로그램 전화 617-983-6800으로 연락할 것.

과거 의학적 진단

상기 원인에 의한 질병으로 진단병	上은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진단일자가 언제입니까	?	

위급 상황

- 위 의학적 진단에 열거된 질병에 노출되었거나 발병이 확실시될 경우
- 위 의학적 진단에 열거된 질병으로 진단될 경우
- 위 의학적 진단에 열거된 질병 중 하나의 발병이 확인된 환경에서 근무할 경우

본인은 105 CMR 590/1999 식품 규정에 의거한 본인의 직무 관련 요건과 본 동의서를 읽었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 해당 증상, 진단, 위급 상황 등 상기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한, 본인이 상기 증상이나 위급 상황을 경험하거나 상기 질병 가운데 하나로 진단될 경우, 그러한 증상이나 질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직 또는 휴직을 권고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식품 당국 또는 식품 규제당국의 조치로 고용계약이 파기되고 본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식품취급자 또는 조건부 피고용연	인의 이름 (인쇄체로 표기할 것) _		
지원자 또는 식품취급자의 서명 .		날짜	
허가 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서명		날짜	

본 문서의 번역은 FDA가 매사추세츠주 멜로즈시에 제공한 협력 지원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메사추세츠주 공중보건부가 작성한 모범 양식으로, 105 CMR 590.002(E) 및 식품 규정 2-201.11 준수를 위한 참고자료로 업계에제공되었습니다. 반드시 본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주 규정으로 본 양식의 사용이 의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개정일: 2018. 10